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본 자산관리위탁계약서(“본 계약”)는 2022년 []월 []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위탁자”)
-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자산관리자”)

위탁자와 자산관리자를 각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전문

- 위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에서 정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득할 예정이다.
-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법 제2조 제5호의 자산관리회사로 선임하고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대상자산(제2조에서 정의됨)의 투자 및 운용 업무(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고자 하고,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로부터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위탁받고, 그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관련 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 (1) “관련서류”라 함은 위탁자와 관련한 서류로서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위탁자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 (2) “대상자산”이라 함은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부동산, 증권,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말한다.
- (3) “독립된 업무담당자”라 함은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 위탁자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정이 요구되는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 (4) “위탁업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업무로서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를 말한다.
- (5) “위탁자의 의사결정”이라 함은 관계 법령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위탁자의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말한다.
- (6) “영업인가”라 함은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인가를 말한다.
- (7)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일반사무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8) “자산관리자”라 함은 서문에 정의된 바와 같다.
- (9) “자산보관기관”이라 함은 위탁자와의 자산보관계약에 의하여 대상자산을 보관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대상자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를 위탁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에 관한 업무

- 1)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실사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업무
- 2)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에 관하여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위탁자를 위해 계약서를 협상하고 작성하며 위탁자의 명의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기타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 업무
- 3)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
- 4)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하는 업무
- 5) 부동산을 위한 보험을 위탁자의 명의로 가입하고 유지하는 업무
- 6) 기타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에 필요한 업무

(나)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업무



- 1)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부동산투자자문 회사에 대한 평가 위탁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용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일
- 2)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제반 업무(부동산개발 각종 인허가 취득, 시공 관련 대관업무,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시공사의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업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등) 및 관련 용역사와의 협의 및 협조 업무
- 3)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관리 및 운용 지시
- 4) 기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다)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업무

- 1) 위탁자의 연간 사업계획 또는 주요 임대차조건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을 협상, 작성, 위탁자의 명의로 체결, 변경 및 해지하는 업무
- 2)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반환하는 업무
- 3) 임차료 · 관리비 기타 비용을 청구 · 징수하고 임차인을 관리하는 업무
- 4) 임대시장을 분석하여 임대계획을 세우는 일
- 5)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및 임대대행업체를 감독하는 업무
- 6) 기타 임대차에 필요한 업무



(라) 증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 1)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의 주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위 취득에 따라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른 경영관리
- 2)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증권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계약서를 협상하고 작성하며 체결하는 업무
- 3) 기타 증권을 매매하거나 증권의 매매를 위탁하는 업무
- 4) 위탁자를 위하여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
- 5) 기타 증권의 매매에 필요한 업무

(마) 금융기관에의 예치에 관한 업무

- 1)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 2)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폐쇄하는 업무
- 3) 예금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 4) 예금을 계좌 이체하는 업무
- 5)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업무



6) 기타 예치사무에 필요한 업무

- (바)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업무
- 1)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 및 처분을 위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실사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업무
 - 2)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 및 처분을 위한 계약서를 협상하고 작성하며 체결하는 업무, 기타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 및 처분
 - 3)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급하는 업무
 - 4)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업무
 - 5) 기타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업무
- (사) 차입 및/또는 사채발행에 관한 업무
- 1) 차입 및/또는 사채발행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 2)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차입 및/또는 사채발행에 관한 계약서를 협상하고 작성하며 체결하는 업무\일, 기타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차입금 및 발행사채 상환 업무
 - 3) 기타 차입 및/또는 사채발행에 필요한 업무
- (아) 자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 1) 위탁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정보 및 관련자료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등 위탁자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사결정 보조
 - 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매 분기별 및 매 결산기별 투자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 및 매 월, 매 분기 및 매 결산기별 재무제표의 각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
 - 3) 전월의 자산관리내역을 위탁자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 통보하는 업무
 - 4) 대상자산의 투자·운용, 부동산개발사업, 증권의 매매, 차입 등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 5) 독립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와 업무를 협조하는 업무
 - 6)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재수탁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하는 업무
 - 7) 위탁자가 건물관리 또는 시설관리와 관련한 업무, 부동산개발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관리자 이외의 회사에 직접 위탁한 경우 해당 회사를 감독하는 업무



- 8) 위탁자의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실무 사무의 수행
- 9) 위탁자의 주식 또는 사채 발행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위탁자의 자본금·사채발행금의 필요성, 시장의 상황 및 기타 제반 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 주식·사채발행안 제공, 주간사 선정, 필요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투자설명서 준비 등 제반 업무
- 10) 대상자산의 투자·운용, 부동산개발사업,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배·경영지원,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취득 및 처분(원본상환 포함), 기타 증권의 매매, 차입·사채발행 등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 11) 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신청 등 제반 행정 업무
- 12) 기타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업무

(자) 기타 업무

- 1) 대상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의 의결권·동의권 행사
 - 2)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자산보관기관 및 판매회사의 선정
 - 3)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 업무
 - 4) 위탁자의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
- (2) 위탁자는 제1항의 업무 중 건물관리 또는 시설관리와 관련한 업무, 부동산개발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관리자 이외의 다른 회사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해당 건물관리 또는 시설관리 회사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해당 건물관리 또는 시설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 (3) (i) 법 제12조 소정 사항 및 기타 위탁자의 정관상 위탁자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및/또는 (ii) 법 제13조 소정 사항, 기타 위탁자의 정관 및 본 계약상 위탁자의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자산관리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관계 법령 또는 감독당국의 지침의 변경 등으로 위탁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자산관리자가 업무범위와 수수료를 협의하여 본 계약 제14조에 따라 서면으로 본 계약을 변경한다.



제4조 (자산관리의 방법)

- (1) 자산관리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위탁자의 정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단,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탁자의 사전 승인(관련 법령 및 위탁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자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미함, 이하 같음)을 얻어야 한다.
 - (가) 자산관리자가 위탁자의 정관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연간사업계획에서 정한 총 예산을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 및 영업비용의 경우. 다만, 긴급한 상황(예컨대 급히 집행하지 않으면 자산의 안전 또는 인명이 위험하게 된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선집행한 후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다)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 (라) 위탁자의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권의 취득 및 처분
 - (마) 위탁자의 차입 및 사채발행
 - (바) 기타 관련 법령 및 위탁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3)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대상자산을 자산관리자의 고유자산 및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등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4) 자산관리자는 법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대상자산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 보고서 작성 및 관련자료 제공 의무)

- (1) 자산관리자는 매년 자산관리자의 차기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공하여, 위탁자가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위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영업인가를 득한 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으로 한다.
- (2) 자산관리자는 매 결산기의 투자보고서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련자료를 매결산기 종료일 후 40일 이내에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분기의 투자보고서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련자료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 (3) 자산관리자는 자산운용 내역에 관한 월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위탁자의 이사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자산관리자는 매 회계기간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산일 또는 합병일)을 기준으로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5)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작성, 제공하는 보고서 및 관련서류는 관련 법령 및 관련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자산관리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해당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장부, 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 (1)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장부 등 위탁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위탁자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자산운용과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자산관리자는 관련서류를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고, 위탁자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7조 (독립된 업무담당자)

- (1) 자산관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독립된 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 독립된 업무담당자와 체결한 계약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독립된 업무담당자와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 (독립된 업무담당자와의 협조 등)

- (1) 자산관리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독립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는 이에 응하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독립된 업무담당자로부터 합리적인 업무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 (2)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업무담당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금지행위 등)

- (1) 자산관리자는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관리자 및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운용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또한 자산관리자는 고유자산의 관리업무, 자산관리자 및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운용업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야기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이해 충돌이 직·간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자산관리자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자산관리자(자산관리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하며, 자산관리자는 그들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여야 함)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위탁자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위탁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상의 금지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제10조 (수수료)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11조 (비용 부담)

- (1)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영업인가 전에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가) 부동산, 증권 및 기타 자산의 취득, 임대, 관리, 운용 또는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기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재무/회계/회계감사/세무/금융/투자자문 수수료, 부동산투자자문 수수료,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물리적인 실사 및 환경실사를 포함한 기타 실사용역 수수료, 매각자문수수료, 시장조사수수료, 설계수수료, 감리수수료 등
- (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대관업무, 인·허가 취득, 민원 해소 등 각종 시공 관련 비용 기타 부동산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
- (다) 부동산, 증권 및 기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국민주택 채권 또는 관련 국공채 매입액, 담보설정 또는 변경 수수료,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 법인설립관련 비용(등록세, 증지세, 공증료, 법무사수수료 등)
- (라) 신주발행비용, 대표주관 수수료, 판매 수수료, 인수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기타 일반관리비, 발기인총회 관련 비용, 주주총회 관련 비용, 투자설명회, 신문광고, 안내물제작 등 각종 홍보비용, 증권발행 신고분담금 등 제반비용
- (마) 증권투자자문 수수료, 기타 금융자문 수수료(공모, 사모주선 및 대출주선 등)
- (바) 부동산의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에너지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 입주공사비용(TI), 기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 및 기본적 지출, 개보수 등의 비용, 감사 및 세무대리 수수료, 소송관련비용
- (사) 보험료, 부동산, 증권 및 기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선협상 보증보험료, 매매계약 보증보험료, 협약이행 보증보험료
- (아) 임대중개수수료, 임대차 관련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
- (자) 위탁자의 기업홍보 활동(IR), 위탁자의 홈페이지 제작 유지관리비 등 위탁자의 투자자 관리를 위한 제반비용,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각종 공고비용
- (차) 시설물 교체나 대상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법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컨설팅 수수료, 개량(리모델링, 용도변경 등) 관련 자문(CM업무 등) 비용
- (카) 사업계획서, 자산운용보고서 등 자산관리회사에서 각종 감독기관 제출용, 공시용 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의 인쇄비
- (타) 일반사무수탁 수수료, 자산보관수수료 등 독립된 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
- (파) 기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하) 기타 자산운용업무 수행에 관련된 비용



(거) 위 각 항목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비 등 부대비용

- (2)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재수탁회사를 사용할 경우 그 재수탁회사에 지급되는 용역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계약의 양도 및 재위탁 등)

-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당사자의 지위, 수수료청구권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2) 자산관리자는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업무 중 일부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위탁자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에 재위탁하거나 기선임된 재수탁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는 부동산관리회사(PM) 또는 부동산시설관리회사(FM)를 선정하여 자산운용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만,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직접 부동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시설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관리자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가 아닌 위탁자 본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함),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4) 자산관리자는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산관리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자산관리자의 재수탁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중과실 또는 자산관리자 고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재수탁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책임과 면책)

- (1) 자산관리자가 위탁자의 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폭동, 전쟁, 지진, 화재 기타 천재지변 및/또는 독립된 업무담당자의 영업정지, 파산 또는 파업, 자산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증가, 개발기간의 지연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자산관리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거래상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기로 한다.



- (3) 자산관리자는 본 조에 의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이외에 자산관리업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자를 위해 수행한 위탁업무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 제15조에 따라 중도해지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로 한다.
- (2) 위탁자와 자산관리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 (1)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 지급불능, 부도, 파산, 워크아웃, 회생절차의 개시 등 자산관리자가 법상 자산관리회사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2)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30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위반 당사자가 서면 해지 통지를 수령한 날에 발생한다.
- (3)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 및 비용 등을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서 면제된다. 단, 본 계약의 해지 이전에 발생한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책임은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4)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업무가 제3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산관리자는 그 기간까지 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될 날부터 최대 120일까지의 기한을 한도로 한다.

제16조 (계약종료시의 조치)



- (1) 본 계약이 해지 기타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청산종결 등기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계약종료 시점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는 일
- (나)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위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서류 및 자료(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를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새로운 자산관리회사에게 교부하고 전달하는 일
- (다) 위탁자의 새로운 자산관리회사가 위탁자의 자산관리 업무를 즉시 인수할 수 있도록 위탁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제반 조치(업무 수행상황의 설명, 업무이관 관련 인력확보지원 등)를 이행하는 일
- (라)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인계에 필요한 사항
- (2) 위탁자는 제1항의 업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상 필요하거나 감독 관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기간 및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자산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영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통지)

- (1) 본 계약상 요구되는 통지 및 기타 의사전달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직접배달, 인편 배달, 메일, 팩스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전자전송 방식에 의해 전달된다.
- (2) 제1항에 의한 지시 또는 통보의 경우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당해 회사의 법인 인감에 갈음하여 별도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에 그 용도를 명시한 인감신고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의 변경에도 동일하다.
- (3) 당사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를 받을 장소 및 수령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 (1) 본 계약은 한국어로 체결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2) 본 계약과 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내용이 우선 한다.
- (3)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하되,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수수료

[다음 페이지에 서명(기명) 날인됨]



위탁자와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16층(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대표이사 윤 양 수



위탁자와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자산관리자 :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16층(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대표이사 김 정 근



별지.

수수료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는 다음 각 조와 같다.

제1조 매입수수료

(1) 계약기간 동안 위탁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매입수수료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text{매입수수료} = \text{매입가액} \times \text{영점오퍼센트}(0.5\%) \text{ (부가가치세 별도)}]$$

- 매입가액은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가
- 매매대가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함)으로 규정된 총 금액(투자대상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승계한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투자대상자산의 수익과 비용의 정산과 관련한 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2)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수수료를 위탁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마다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 자산관리수수료



(1) 계약기간 동안 위탁자는 위탁자의 매 결산기마다 각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자산관리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자산관리수수료 = 투자대상자산의 매입가액 × 영점이오퍼센트(0.25%) ÷ 365(윤년의 경우 366) × 위탁자가 당해 결산기 동안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은 날 수]

- 매입가액은 제1조 매입수수료 계산식의 매입가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 자산관리수수료는 각 투자대상자산별로 산정함

(2)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제3조 자산관리성과수수료

(1) 위탁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자산관리성과수수료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자산관리성과수수료가 음수(-)인 경우 또는 당해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가 위탁자의 최초 결산기로서 배당금이 없는 경우 당해 결산기의 자산관리성과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관리성과수수료 = (당해 결산기에 대한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 - 최고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 × 일평균 발행주식수 × 이십오퍼센트(25%)]

-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은 당해 결산기에 대한 위탁자의 자산관리성과수수료 차감 전 주당 배당액으로 함. 단,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배당액은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에 포함(산입)하지 않음
- 최고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은 당해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의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 일평균 발행주식수는 당해 결산기 동안 매일의 위탁자 발행 총 주식수를 합산한 것을 당해 결산기에 속한 날 수로 나누어 계산함

(2)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성과수수료를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매각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

(1) 위탁자가 투자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각하는 투자대상자산(투자대상자산 중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일부를 말하여, 이하 “매각자산”)의 총 가치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매각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다.

[매각수수료 = 매각가액 × 영점칠퍼센트(0.7%)(부가가치세 별도)]

- 매각가액은 매각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함. 매매가격 산정 시 매매계약서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승계시킨 채무 및 수익 · 비용의 정산에 따른 공제액은 고려(차감)하지 않음

(2) 위탁자는 투자대상자산 매각 시 자산관리자에게 제1항의 매각수수료 외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매각성과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아래 계산 결과가 음수(0)인 경우 매각성과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매각성과수수료 = (매각가액 - 매입가액) × 일십퍼센트(10%)(부가가치세 별도)]

(3)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각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를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